

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송도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64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1일

발 의 자 : 송도호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, 김정태, 김수규,
김달호, 송재혁, 김상훈,
이호대, 채인목, 김 경
의원 (9명)

1. 제안 이유

- 서울시는 현재 2022년까지 총 3,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「2022-3000,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」를 추진하여 올해 500만 그루를 시작으로 향후 4년 간('19.~'22.) 1,500만 그루를 추가로 식재, 민선 6~7기 총 3,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생활밀착형 '도시숲'을 확충할 계획임.
- 이러한 나무심기를 통해 미세먼지, 폭염, 도심 열섬현상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으로 하여금 나무심기를 진흥·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입법화하기 위함임.

- 또한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도시림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,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관련 용어를 정의함 (안 제2조)
- 나. 나무심기 및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함 (안 제3조)
- 다. 시장은 중·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, 관련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 (안 제4조)
- 라.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5조)
- 마.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6조)
- 바.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7조)
- 사.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8조)
- 아. 시장이 숲 조성 활동 공적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9조)
- 자.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(안 제10조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,
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,
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나무심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,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나무심기”란 산림, 공원, 도로변 자투리 땅, 국·공유 유희토지, 마을 빈터, 한계농지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,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숲 조성 활동”이란 민·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으로 가꾸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.
3. “나무은행”이란 주택재건축 시행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하여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·보관·관리하고, 필요 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도시림등”이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의 도시림, 같은 조 제5호의 생활림, 같은 조 제6호의 가로수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나무심기 및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중·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5조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를 위한 계획(이하 “도시림등 조성·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
 2. 심을 도시림등의 수량을 늘리는 등 관리 방안
 3. 연차별 도시림등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시림등 조성·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의 구성)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, 기술지원,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나무심기 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7조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)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5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나무심기 지원) ① 시장은 자치구 및 민간단체의 나무심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민간단체에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

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① 시장은 숲 조성 활동에 공적이 탁월한 자치구 또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, 상패,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에서 ‘2022-3000,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’ 사업으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 및 제6조(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의 구성)에서는 새로운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,
 - 첨부 : 1. 2019년 기 추진사업 목록 1부
 - 2. 2022-3000,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 방침서 1부
- 동 조례 제7조(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회위원회의 구성) 부문에서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

- 총 비용 = 75,000천원(연 평균 15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20)	(2021)	(2022)	(2023)	(2024)	
세출	위원회 구성 (제7조)	15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75,000
	소계	15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75,000
총 비용		15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75,000

다. 전제

-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총25인으로 구성하고, 이 중 내부위원 5인 (푸른도시국장 및 실과장), 외부위원 20명이며, 년 4회 운영된다고 가정

라. 비용추계 산식

- 위원회 운영비 : 15,000천원 × 5년 ≒ 75,000천원
- 위원회 참석 수당 : 150,000원 × 20명 × 년 4회 ≒ 12,000천원
 - ▶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(수당의 종류와 지급액)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(10만원)에 위원회가 2시간 이상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추가비(5만원) 포함 금액 준용
- 업무추진경비 : 30,000원 × 25명 × 년 4회 ≒ 3,000천원
 - ▶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해설집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1(음식물 가액범위: 3만원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주 무 관 박경순

☎ 02-2180-7933

e-mail : kssunbi@seoul.go.kr

